

영국판례 2

표현상에 악의성이 있을 경우
피고측의 면책특권은 박탈되어야

Angel v, H. H. Bushell & Co. Ltd. and another

[1968] 1 Q. B.813

사건개요

원고는 어떤 제 3 자에 의하여 믿을 만한 기업인이라고 피고들에게 소개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어떤 특정한 물품을 보유하고 원고는 그 매수인을 구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원고가 그 물건을 구입한다는 언약은 없었다. 얼마 후 피고들은 그 물품의 시장상태를 걱정한 나머지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 중 1 인인 대표이사가 그 제 3 자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불행히도 원고의 주소를 모르니 원고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물품가격의 하락을 불평하고 「원고는 통상적인 기업윤리에 정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청구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여러 가지 항변 중에서 특히 조건부 면책특권의 항변을 제기하였다.

판시요지

(1) 어떤 기업인을 두고 그는 기업윤리에 정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중대한 비방이 된다. 왜냐하면 「윤리」에는 도덕적 기준이 포함되고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편지의 문맥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그 말은 곧 원고가 존경할 만한 기업인들이 상호간에 거래할 때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명예를 침해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2) 그 제 3자가 원고를 피고들에게 소개하고 원고를 추천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들이 제 3자에게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 것은 통상의 경우 조건부면책에 해당된다고 일응 인정되나 이러한 법리는 의무를 면(이행)하거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송할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사실상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겠으나 악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책특권이 박탈된다고 보아야 한다.

Milmo 판사의 판결이유요지

이 소송에서 원고(Angel)는 피고 Bushell 이 피고 H M. Bushell & Co.를 대표하여 Phillips & White Co. 및 그 회사의 소유 및 지배를 하고 있는 White에게 발송한 1962년 7월 9일자 편지에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소구하고 있다. 문제되고 있는 편지의 문구는 「Angel 씨(원고)는 통상적인 기업윤리에 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다 피고들은 그 비위에 거슬리는 말이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 있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나아가 정당행위의 항변과 조건부 면책의 항변을 제출하였다.

먼저 사건의 배경에 관하여 본다.

원고(Angel)는 전쟁기간 동안 영국공군의 조종사로 복무하였고, 완전한 자격을 갖춘 비행기 엔지니어였다. 복무를 마친 후 1952년 초부터 대부분 중고품인 항공기 부속품장사를 하여 왔고, 1962년 초 이 계통의 사업을 자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자본이 넉넉하지 못하여 재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대부분 군용비행기의 부품을 취급하였고, 고객들을 위하여 외국 정부들, 특히 London 주재 공군 무관들과의 접촉에 의존하여왔다. 공급적 측면에서 원고는 군용비행기의 부품에 관하여는 거의 전적으로 영국공군의 잉여물이나 구식재고품에 대한 정부매각에 의존하여 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비행기 기체(frame)부분품 이외의 부품(예컨대 엔진이나 이와 유사한 부품)은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Bushell)는 피고 H. M Bushell & Co.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H M. Bushell & Co.는 피고 Bushell 의 분신(alterego)이므로 특별히 양자 사이를 구별하지는 아니한다. 피고 Bushell 은 소위 잡화상이었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합리적인 전망이 보이면, 거의 모든 형태의 매매활동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는 명백히 크게 성공한 정력적인 기업가였는데 상당기간 동안 그의 거래활동은, Birmingham 지역의 4 개 소매점을 중심으로 한 의류에서 공구에 이르기까지의 종전 정부 잉여재고품에 대한 매도와 금속폐품에 대한 대량거래의 두 주된 범주로 나뉘어진다. 1961~62년 사이에 피고 Bushell 에 대한 금속폐품의 주요공급원은 영국 공군비행기를 매수하는 방법이었다. 때때로 영국 공군청은 공군비행장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로 잉여 또는 구식의 비행기에 대한 청약의 유인을 하여 왔다. 피고들은 청약 유인한 비행기들을 검사한 후 청약하였고, 청약이 성사를 이룬 경우에는 사람들을 보내 비행장 내의 비행기를 분해하기 위하여 수송하였다. 분해된 물체 덩어리는 피고들을 포함한 고객들 앞으로 비행장에서 직접 운반되었으나 엔진이나 케이블과 같이 현장에서 쉽사리 분해 제거되어 선별될 수 없는 부분들은 Birmingham 에 있는 피고들 공장으로 운반되어 그와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때로는 분해과정에서 그 자체로 처분 가능한 부품이 입수되기도 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피고들의 상점에서 소매되었고, 나머지는 그 부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사실을 알려 매수토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분되는 부품은 폐품가치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그러한 거래를 피고들은 소위 「수입이 좋은 물건」(Plum)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피고들이 폐품으로 처분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매수한 비행기 및 그 물체에 대한 총매상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피고들은 결코 비행기 부품을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자」(stockist)가 아니고, 피고들도 그러한 방면으로 특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 Angel 과 피고 Bushell 은 1961년 말 또는 1962년 초경 Hatherley 에서 있었던 정부공매장소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상 친구인 White(위에서 언급한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비위에 거슬리는 내용의 편지를 수령한 Phillips & White Co. 소유·지배자)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인데, Phillips & White Co.는 원고가 종사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다만 원고는 거의 전적으로 비행기기체에 관심이 있을 뿐인데 비하여 White 는 주로 비행계기에 관심이 있었고 비행기 기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차이가 있었다. White 는 원고 Angel 과 피고 Bushell 을 결합시키는 것이 그들의 기업에 공동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White 는 드물지 않게 피고 Bushell 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매수하여 왔고, Bushell 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부품을 구득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 Bushell 로서도 White 가 관심을 가지는 비행기 부품이 눈에 띄면 White 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문의하곤 하였다. 피고들은 변론에서 White 또는 그의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Angel 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수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atherly 에서 White 는 원고 Angel 을 피고 Bushell 에게 최근 自營사업을 시작한 비행기 기표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접촉이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원고가 선택한 비행기 부품을 피고들이 요구하면 원고는 그들의 공동이익이 되도록 이들을 팔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원고 Angel 은 피고 Bushell 에게 실제로는 그 자신이 재고품을 보유하거나 완성된 비행기를 살만한 처지에는 있지 아니하나 Vampire 기나 Meteor 기와 같은 특정종류의 비행기에 대하여는 종종 특정부품을 물색하여 왔다고 말하였다. 원고 Angel 은 피고 Bushell 에게 즉각적인 매도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 및 전매가 있기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그 부품들을 보유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어느 측으로부터도 그 기간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었고, 피고 Bushell 도 당시 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 Bushell 이 폐품목적으로 비행기를 매수하게 되면, 그의 직원인 Woodward 가 원고와 연락하여 원고가 부품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만일 원고가 특정 부품에 대하여 부품 자체로 전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피고 Bushell 은 그 부품을 보관하고(결코 강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고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게 고객이 생기면 그들의 공동이익이 되도록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가 최종적으로는 피고들이 입수한 부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수하겠다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주목을 요하는 점이다. 그러나 원고가 그 부품을 매수한 경우에는 피고 Bushell 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 다 주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더욱이 특정 부품이 부품으로서 판매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지의 점에 대하여 원고가 말하기 전부터 피고들은 이미 이들 부품을 폐품으로 매수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ushell 과 공군청 사이에 이용되는 계약형태 아래서 피고 Bushell 은 폐품 이외의 방법으로 전매하기에 앞서 공군청으로부터 통관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소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ushell 이 Hatherly 에서 비행기 부품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자」 (stockist)가 됨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사업을 확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인상일 뿐 피고 Bushell 이 결코 의도적으로 그 취지를 전달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와 피고들과의 그 후의 실질적인 거래는 Woodward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한때 피고들의 외부매니저로 묘사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들이 매수한 비행기를 폐품으로 분해하기 위한 조장에 불과하였다. 그는 더 이상 피고들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며, 일반 공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들에게 고용된 당시 Woodward 는 주말 잠깐 동안 피고들 사무실에 머무르는 외에는 거의 그들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였고, 주말 방문을 통하여 피고 Bushell 과 접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Bushell 과 매일 전화통화하거나 문서 위에

간단한 부전을 붙여보고 하는 외에는 공식문서나 편지 등의 작성을 통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

그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St. Athan 공군비행장에서 Vampire 기를 매수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가 Vampire 기에 관심 있다는 점을 상기한 Woodward 는 원고와 접촉하여 현장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Woodward 가 생각하였던 것보다는 관심이 덜하였고, 원고는 당시 그 지역에 발생한 심한 소아마비로 인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Woodward 는 전화통화에 의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고 원고가 지시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Woodward 에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의 기체 부품은 예비부품으로서 전매될 가능성이 크다고 회답하였다. 이에 Woodward 는 피고 Bushell 과 접촉하여 원고가 고객을 찾아낼 기회를 갖도록 부품을 피고 Bushell 농장에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Vampire 기체는 Bushell 농장에 1962 년 3 월경 도착되었다.

1962 년 3 월 31 일 피고들은 공군청으로부터 Kimble 비행장에 있는 10 대의 Meteor 기를 매수 하였다. Meteor 기는 Halton 에서 구입한 Meteor 기보다 새로운 모델이 있으나, 원고는 위 Halton 에서 구입한 비행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폐품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였었다. Woodward 로부터 Meteor 기 구입 사실을 연락받은 원고는 4 월 6 일 Meteor 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Kimble 로 가기는 하였으나 기껏 몇 시간 머물렀을 뿐이고, 검사 후 원고는 특정부품은 예비부품으로서 전매를 위하여 보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대화는 St. Athan 에서 Vampire 기에 관하여 나누었던 것과 같은 선상의 것이었고 Woodward 는 재고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는 부품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받지는 아니하였었다는 점 및 그 전체적 사업에 투기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Woodward 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다. 피고 Bushell 이 당시 작성한 개략적인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추천의 부품을 폐품으로 매도하는 경우 거래는 근소한 이익을 남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Bushell 은 「잘못되었다. 농장에 있는 부품들이 순조롭게 판매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고 기재하여 놓고 있다.

여기에서는 피고 Bushell 이 원고에게 어떤 부품이 예비 부품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Meteor 기 부품들이 피고 Bushell 농장에 옮겨진 것은 1962 년 4 월경이었는데 이것이 원고와 관련된 마지막 영업 활동이었다. 그 후 원고와 Woodward 사이에 수 많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항상 그러한 부품에 대한 처분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피고들은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원고는 Woodward 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 피고 Bushell 과 그와 같은 내용을 통화한 사실도 있었다. 1962 년 7 월 9 일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두나 문서로 왜 피고들 보유부품을 처분하여주지 않느냐를 문의한 바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윤리에 어긋나는 불신을 받거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암시된 바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1962년 7월 8일 피고 Bushell은 White에게 원고를 비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White씨에게 우리가 Angel씨(원고)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큰 불행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편지의 내용을 Angel씨에는 전하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Angel씨는 Vampire기와 Meteor기 물체 등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Vampire기와 Meteor기 물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톤 당 가격이 30파운드나 하락하였고, 운송 및 보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00파운드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전화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과 White씨와의 그간 원만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여왔음에 비추어 Angel씨에 대한 그와 같은 사정을 White씨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White씨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Angel씨는 통상적인 기업윤리에 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일주일 내에 Angel씨로부터 적절한 적극적인 회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Angel씨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편지가 White씨를 거치지 않으면 Angel씨에게 전달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이 방법이 접촉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편지 수취인인 White가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White는 편지를 받고 자신을 실망시킨 Angel에 대하여 적의가 컸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전화로 원고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를 따지고, 편지를 복사하여 보내기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자신이 회답할 것인가 고려하였지만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상담변호사는 1962년 7월 18일 피고회사에게 다음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본인은 Angel씨 대리인입니다. Angel씨는 Bushell씨가 White씨에게 보낸 편지 1통을 전달하였는데, 그 편지 내용 중 'Angel씨는 통상적인 기업윤리에 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는 부분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이에 Bushell씨는 원고에게 이 말을 취소하는 답신을 하고 White씨에게는 Angel씨를 명예훼손한 데 대하여 사과편지를 보내며 Angel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Bushell은 이 편지를 받은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답신을 보냈을 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여, 2년이 지난 1964년 6월 26일 재차 이를 최고한 후 1964년 7월 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먼저 문제된 부분이 명예 훼손적인 내용인가를 본다. 본인으로서 어떤 기업인이 기업윤리에 정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 기업인에게 중대한 비방이 된다고 본다. 예의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편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후자와 관련된 비방이다. 윤리에는 도덕적 기준이 포함되고,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최소한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편지의

문맥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말은, 곧 원고가 존경할만한 기업인들이 상호간에 거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예를 침해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의 정당행위의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Vampire 지와 Meteor 기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어느 경우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수하고자 하는 통지를 하기에 앞서 매수하였던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자기계산으로 사업을 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피고들에게 자신 또는 그의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연락을 함에 있어서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책임을 원고 또는 그의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강제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원고가 그의 집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에 계약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다만 피고들 주장에는 원고가 피고들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상적인 기업윤리에 어긋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피고는 원고가 특히 피고에게 비행기 부품을 매수하여 보유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실제로 매수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적어도 그 거래결과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피고 Bushell 은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기업윤리에 대하여 다음 4 가지를 들고 있다. ① 꾸미지 않고 사실대로 말할 것, ② 약속을 지킬 것, ③ 이중으로 매도하지 않을 것(다른 사람이 종전에 당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도록 제의하여도 일단 매도한 이상 그 가격을 고수하고 이행할 것), ④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소개를 등 뒤에서 이용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피고들이 문제삼고 있는 점은 첫번째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인 생각으로는 원고가 통상적인 기업윤리에 정통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다. 피고 Bushell 은 처음부터 원고에 의한 처분이 시간을 요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처분으로 자신이 많은 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매력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비난은 원고가 문제된 시기에 거래하고자 하는 접촉상대방과 그 전망, 그의 거래활동을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러한 점들을 공개하도록 미리 요구하였던 바가 없었음이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조건부 면책의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의 요지는 첫째,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의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와 접촉하는 유일한 방법은 White 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 뿐이었다는 점. 둘째는, White 가 Angel 과 Bushell 을

서로 소개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들과 White 는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첫째의 점은, 만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의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원고가 이에 응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White 를 통하여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들이 위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았으면 White 에게 보낸 편지에서 원고의 비위에 거슬리는 내용은 별개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원고에게 보내줄 것을 White 에게 부탁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어떤 서신도 보내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그렇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요구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들이 White 에게 보낸 편지에서 원고와 통화한 바 없었다고 말하는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피고 Bushell 이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Woodward 가 빈번히 원고와 통화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일견하여 피고들이 White 에게 보낸 문제의 편지에 피고 Bushell 이 White 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관심사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White 가 원고를 피고 Bushell 에게 소개하고, Bushell 에게 원고가 비행기 사업과 관련하여 유능한 접촉을 하고 있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피고 Bushell 이 White 에게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은 통상의 경우 조건부 면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의무를 면(이행)하거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송할 의도가 아니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겠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악의에 대한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조건부 면책특권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피고 Bushell 은 실제로 어떤 의무를 면(이행)하거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문제의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피고 Bushell 은, 폐품가격은 떨어지고, 그의 농장에 있는 예비부품은 원고가 처분하여 주지 않는 한 피고 Bushell 의 거래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Bushell 은 화가 났었고, 이에 근거없이 원고를 비난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피고 Bushell 이 문제된 편지를 악의를 가지고 쓴 것으로 결론지으며 원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Milmo 판사는 *McCarey v. Associated Newspapers Ltd.* 사건판결에서 적시한 Pearson 판사의 수립원칙에 따라 250 파운드를 손해액으로 책정하였다.